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목 차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1
1.1 목적 및 수행범위	3
1.2 수행 절차	3
제2장.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5
2.1 정산 범위	7
2.2 정산 기준	7
2.3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12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방법	19
3.1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지자체 작성)	21
3.2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최적화추진단 작성)	25
3.3 국고보조금 심사·확정(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 작성)	30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34
제4장. Q&A	37
제5장. 서 식	59
[붙임자료]	6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1.1 목적 및 수행 범위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산 관리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타 용도 사용되는 것을 방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보조사업자와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 시행으로 정산 및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도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붙임6」 참고

1.2 수행 절차

□ 기관별 정산보고 및 검토 절차



1.2.1 시·군·구 지자체(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고대상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 제출기한 : 준공 및 폐지승인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자는 제출서식(실적(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정산검토 필요자료 등) 제출 및 폐기물처리시설 예산관리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입력 (참조.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심사·확정서 조회방법)
 - 정산 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변경 시 패널티 부과
- ※ 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공열분해 시설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1.2.2 유역(지방)환경청(실적·정산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확정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용지보상비, 시설 부대비, 발생이자 등)를 주관하며,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가능

1.2.3 최적화 추진단(기술검토)

- 최적화 추진단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술검토 요청을 받을 시 기술 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최적화추진단
1. 도급공사비 2. 폐기물처리비 3. 관급자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시설부대비 7. 용지보상비 8. 이자 등	○ [] 에 대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 검토 항목 - 계약(변경)관련 서류 - 설계변경 관련 문서 및 조건 -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포함)

-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사업 신·증설 사업에 한해 최적화 추진단에 필요시 기술검토 요청

최적화 추진단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국고보조사업 중 신·증설사업 (15년 이상 사용에 따른 대체 신설 포함)	· 최적화 추진단 검토요청 사업 외 설비 설치·교체·보수에 의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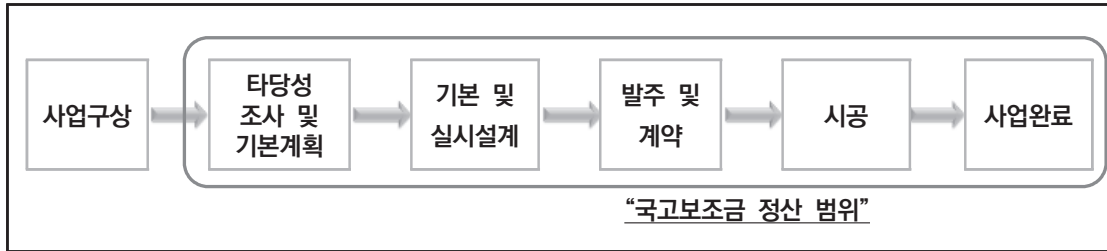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제2장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2.1 정산 범위

2.1.1 사업단계별 정산 범위



2.2 정산 기준

2.2.1 집행내역별 정산인정 대상

- 공사비, 관급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장비구입비, 공사 과정에서 시행한 측량비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각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이내
-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지하안전영향평가비·장외영향평가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개발훼손부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 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하 안전영향평가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비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준공까지의 금액만 인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비용

- 공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의 위탁수수료
- 설치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시설관련 심의위원, **안전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의 출장비, 수당 및 제경비**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2.2.2 집행내역별 정산 제외 대상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시 지원제외 비용)
- 장비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용지(보상)비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접보상비와 토지 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간접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기촉탁 수수료** 등)
- 목적에 맞지 않는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굴착·선별 후 이적)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지자체 직접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불인정(다만, 선별토사 재사용을 위한 운반비용은 인정)**
- 목적외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비, 사업대상부지 외 진입도로, 주민친화시설(정자, 파고라 등)
-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 등 (주민지원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 원인자부담금 : 「폐촉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 당해 사업비로 충당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불인정(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매입세액불공제액, 건설이자 등)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20년 12월 10일 기점으로 폐촉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 받은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하되 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정산 제외
 - ('20.12.10. **이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의 10% 이내)는 총사업비를 초과 할 수 없음
 - ('20.12.10. **이후** 설치계획 승인 완료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20% 이내로 별도 지원가능. 단,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환경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가능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

- 국고보조사업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
(반환된 지체상금은 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정산)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편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법이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기준 외에 환경부와 협의 없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구 분	정산 인정대상	정산 불인정대상
공사비	○ 시설공사 선금, 기성금, 준공금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물가변동 포함)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 한국전력 시설부담금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 ○ 장비 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지체상금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사업기간 내 사용 하지 않은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조사· 용역비	○ 공사과정에서 시행한 측량비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제61조(공사비의 정의)②항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조사용역비, 안전점검비, 부담금(토지 관련 제외)에 한함 ※ 시설부대경비 효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조사용역비 등)에는 제외한다. ○ 입지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설계안전성(DFS) 검토 ○ 설계VE, 원가계산 검토 ○ 설치 검사수수료(한전 사용전 검사 수수료, PSM비용 등 포함) ○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
보상비		○ 직접보상비:토지비, 이주대책비·정착금 등 ○ 간접보상비:분할측량비, 감정평가비, 권리 이전비, 지장물 이설 및 보상업무 부대경비 등

구 분		정산 인정대상	정산 불인정대상
시설 부대 경비	설 계 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보상비(터키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 투자사업)	○ 설계비 요율 초과분
	감 리 비	○ 책임·시공·검측 감리비	○ 감리비 요율 초과분
	시 설 부 대 비	○ 목적에 맞는 감독관의 국내 여비 ○ 감독관의 안전 용품비 ○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조달 수수료 등 공사 관련 수수료 ○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 공공요금	○ 해외 출장비, 사무 용품비 ○ 민원관련 비용(변호사 비용 등) ○ 착공 및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운영에 관련된 공고료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신주 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부담금 (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건설이자 등 ○ 시설부대비 요율 초과분 ○ 폐기물 처분 부담금

2.2.4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 총사업비 승인문서 ○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재원협의 검토결과서 ○ 지출결의서 :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정산확인서 :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 ○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사조서	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 ○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관급 자재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 물품검수조서 :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 대체 인정 자료 ①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② 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 등)
시설 부대비	○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구입비(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민간 투자 사업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지출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 사무 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2.3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 사업단계별 정산에 필요한 서류(자료)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3.1 사업구상 및 계획 단계

- 해당사업의 개요 :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방식, 총사업비 등
 - 턴키방식, 대안입찰 방식, 기술제안 방식, 기타공사, 민간투자사업 등
- 총사업비 국고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연도별)
 - 환경부(시·도)에서 송부된 문서로서 국고교부액, 보조율(%), 시설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 자료
-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문서
 -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인 경우 물가변동 관련 자료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지서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납부금액(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 정산 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발생이자 포함) 등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재산정
 -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납부계획서, 납부대장, 고지서, 통장사본 등)

2.3.2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

2.3.2.1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2.2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용역

- 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시설물의 배치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적합한 공법(처리방법) 선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3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2.3.3.1 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사업부지에 대한 기초 조사, 배치계획 및 적용기술에 대한 검토 등
- 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 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 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
 - 기본설계비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방식, 대안입찰방식, 민간투자사업 등의 설계보상비
 - 【붙임4】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준공내역서

2.3.3.2 실시설계

-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인 기본설계와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등을 감안 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할 경우(예 :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요율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율 이내로 집행
 - 【붙임4】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2.3.3.3 기타용역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용역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폐기물처리용역
 - 해당 사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결정 등의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 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통합환경허가 용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허가 등의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 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2.2.4 시설 공사 단계

2.3.4.1 시설공사

○ 시설별 검토사항

구 분	주요검토사항	비 고
공 통	- 공사계약변경 내역의 타당성 - 사업부지 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정산에서 제외 (환경부 협의사항(재원협의 등),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정산 인정) - 사업내용(신설, 대보수, 증설) 및 시설용량(설치단가 등), 처리방법	
소각시설 매립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범위 이내	주1)
그 외 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범위 이내 (폐촉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	
비위생매립지정비	- 조경공사 실시 여부(사용종료 매립지 조경공사는 제외)	주2)
생활자원화수센터	- 구입 장비가 공정의 일부인지 여부	

주1) 폐촉법 개정(20.12.10)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범위는 '2.2.2 집행내역별 정산제외 대상' 참조(p.8)

주2) 조경공사는 주민편익시설 공사와는 별도 공사내역으로 관리(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참조)하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정산제외 대상.

- 제출서류

-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첨부), 준공보고서(참고자료), 준공내역서
- 준공검수 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정산 합의서, 준공사진(시설 전체 사진 1매)
-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
- 설계변경관련 서류는 승인문서 및 감리·감독자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각 설계변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여 별도 양식으로 제출

※ 설계변경 현황 작성양식 예

항 목	계약(변경) 일자	계약금액 (원)			주요 변경사항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최초 계약	2019-03-01				(변경사유 및 물량 간략 기재)	
1차 설계변경	2020-06-01				구내배관 D 300 10m → 15m	
2차 설계변경	2020-11-15				사토량 480톤 → 257톤	
⋮						준공
합계						

2.3.4.2 관급자재

- 제출서류 : 자재별 계약서,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납입고지서(계약금액과 지출결의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

2.3.4.3 장비 구입비

-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제출서류 : 계약서, 지출결의서
 - ※ 공정의 일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중 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2.3.4.4 (책임)감리용역

- 공사의 현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으로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률, 준공도 검토 등을 수행
 - 【붙임4】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 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최종 감리보고서

2.3.4.5 공공기관 대행

- 공공기관에서 사업 대행할 경우 ‘감리비(위탁사업비)’로 분류하고 위탁대행기관의 위탁수수료율(%)에 따라 집행
 - 대행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최종 위·수탁 협약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지출결의서

2.3.4.6 시설부대비

-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출장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감독원, 공무원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함
 - 국내여비를 정산대상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국고 확정 전 집행된 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 출장여비 만을 인정대상으로 하며 오찬비용 등의 업무추진비는 제외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출장목적 확인가능 해야 함), 출장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는 증빙 서류(여비지급 명세서 등)를 별도로 제출
 - 설계 등의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등
 - 감독관의 체재비 및 피복비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 조달청 계약 수수료, 공공요금 등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고지서 등
- ※ 사무용품 구입비(컴퓨터 등 집기류 포함), 착공식 및 준공식 관련비용, 운영 준비에 관련된 비용,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대비용 등은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

2.3.5 사업완료

2.3.5.1 사업완료

- 시설설치검사
 -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 감량화, 혐기성분해, 부숙토 생산 등)은 사업완료 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검사 수수료는 【붙임5】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제출서류 : 설치검사 결과서, 지출결의서

2.3.5.2 사업비 집행내역

- 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
 - 지자체가 다수의 사업이 동일기간 동시 추진되었을 때 일부 혹은 전체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위탁대행인 경우 대행기관의 편성내역 확인
 - 낙찰차액을 예산내역(대상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제외
 - 제출서류 : 세입세출예산서(사업기간 전체)

2.3.6 사업완료 후(사업취소 포함)

2.3.6.1 사업비·이자

- 연도별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취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결정이 취소 또는 정산결과 국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고 이때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비계좌 내역(전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 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 방법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 방법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지자체)와 심사·확정(환경청 또는 환경부)의 작성방법은 아래의 작성법(예시)을 참고

※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방비,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3.1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m³)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2021~2023 (2023.4.28.)			1,500	3,500		

※ 확정된 총사업비 중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민간자본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 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5,000,000,000	1,500,000,000	30.0	3,500,000,000	1,750,000,000	1,750,000,000			
2020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21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22	1,870,000,000	500,000,000	30.0	1,370,000,000	685,000,000	685,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합계	총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조사· 용역비					

4. 세부지출내역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단위 : 원)

구분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금액	채주	비고
공사비	2021-01-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1-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1-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1-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1-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2-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2-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22-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2-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OO전기(주)	
	2022-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OO전기(주)	
	2023-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OO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계비	2019-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0-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리비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2-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21-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OO	
	2021-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22-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OO	
	2022-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OO	
	2022-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OO	
	2022-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23-02-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OO	
		소 계	4,000,000		
		집행내역 총 계	4,958,000,000	-	

5.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6.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7. 복합사업의 사업비 분계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식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특이사항
공사비	준공내역의 금액			
시설별 비율	$A' = A / (A+B)$	$B' = B / (A+B)$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D_B = B + B' \times C$		
시설별 설계비(E)	$E_A = E \times A'$	$E_B = E \times B'$		
시설별 감리비(F)	$F_A = F \times A'$	$F_B = F \times B'$		
시설별 용역비(G)	$G_A = G \times A'$	$G_B = G \times B'$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 = A / (A+B)$ 50억/60억=83.3%	$B' = B / (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50억+20억×83.3% =66.67억	$D_B = B + B' \times 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_A = E \times A'$ 2억 × 83.3% = 1.67억	$E_B = E \times B'$ 2억 × 16.7% = 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_A = F \times A'$ 4억 × 83.3% = 3.33억	$F_B = F \times B'$ 4억 × 16.7% = 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 총사업비 80억인 경우 소각 또는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소각시설(A, 50억) 생활자원회수센터(B, 10억)로 구분하고, 도로, 건축물 등 공동 사용시설(C, 20억)은 공통시설로 분리하여 소각(A)와 생활자원회수센터(B) 만으로 비율을 산정(83.3% : 16.7%)

※ 1.공동시설의 금액을 시설별 비율(A', B')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산출
2.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총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리

3.2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최적화 추진단 작성)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치	사업규모	추정 총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2021~2023 (2023.4.28.)			5,000	1,500	3,500		

2.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년도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계	5,000,000,000	1,500,000,000	3,500,000,000	0	0	0
2020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21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22	1,870,000,000	500,000,000	1,370,000,000	0	0	0

3. 항목별 지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용역비	시설부대비
지출액	4,958,000,000	4,330,000,000	174,000,000	450,000,000	0	4,000,000

4. 사업지출내역 검토

(단위 : 원)

구분	정산금액 지출내역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지출액 총계 (A)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산액 소계 (B)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산제외액 소계 (C)=(A)-(B)	0	0	0	0	
○시설부대비 등					

5. 정산검토 결과

(단위 : 원)

구 분		추정사업비		지출액 ^㉑			미지출액	국고반납액
		당초 ^㉒	재산정 ^㉓	계 ^㉔ =㉒+㉓	정산액 ^㉕	정산제외액 ^㉖	㉕=㉒-㉖	㉗=㉔+㉕
총 계(㉒=㉒+㉓+㉔+㉕+㉖)		5,000,000,000	5,000,000,000	4,958,000,000	4,958,000,000	0	-	
국고	소 계(㉒)	1,500,000,000	1,200,000,000	1,187,400,000	1,187,400,000	0	312,600,000	312,600,000
	보조율(%)	30%	30%	30%	30%			
지방비	소 계(㉒)	3,500,000,000	2,800,000,000	2,770,600,000	2,770,600,000	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㉒)								
원인자부담금(㉒)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㉒)								

※ 지출액^㉑가 사업비^㉒보다 클 경우 미지출액^㉕은 0

※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국고지원대상)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한 후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고, 지방비 등 재산정

6. 검토의견

-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정사업비는 5,000백만원이고 이 중 지출금액은 4,958백만원, 미지출금액은 312백만원임.
- 국고반납액은 미지출금액 312,600,000원 임

덧붙임 : 1. ‘○○시(군·구) ○○시설 ○○사업’ 지출내역 1부.

2. ‘○○시(군·구) ○○시설 ○○사업’ 정산 증빙서류 1부(별도송부). 끝.

<붙임>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일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2021-01-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1-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1-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1-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1-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2-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2-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22-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2-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OO전기(주)	
	2022-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OO전기(주)	
	2023-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OO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 계 비	2019-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0-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 리 비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1-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2-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21-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OO	
	2021-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설업	
	2022-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OO	
	2022-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OO	
	2022-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OO	
	2022-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설업	
	2023-02-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OO	
		소 계	4,000,000		
지 출 내 역 총 계			4,958,000,000	-	

※ 세부지출내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사업비, 집행액, 정산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출 예시(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① 추정사업비④가 지출액⑥ 보다 작고, 정산액③ 보다 큰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국고반납액
		당초④	재산정④'	계⑤=㉓+㉔	정산액③	정산제외액④	㉕=㉓-㉔	㉖=㉔+㉕
총 계(㉗=㉓+㉔+㉕+㉖)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4,900,000,000	300,000,000	-	
국 고	소 계(㉘)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30,000,000	300,000,000	330,000,000
	보조율(%)	30%	30%		30%			
지 방 비	소 계(㉙)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730,000,000	270,000,000	-	
	시 · 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 · 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㉚)								
원인자부담금(㉛)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㉜)								

- 지출액⑥ : 추정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⑥ 국고부분을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⑥의 국고가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④' 국고= 지출액⑥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 12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⑥ 국고는 12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③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③ 국고를 산출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산출

② 추정사업비④'가 지출액⑥, 정산액③ 보다 작은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국고반납액
		당초④	재산정④'	계⑤=㉓+㉔	정산액③	정산제외액④	㉕=㉓-㉔	㉖=㉔+㉕
총 계(㉗=㉓+㉔+㉕+㉖)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5,100,000,000	100,000,000	-	
국 고	소 계(㉘)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	300,000,000	-
	보조율(%)	30%	30%	-	-	-		
지 방 비	소 계(㉙)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900,000,000	100,000,000	-	
	시 · 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 · 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㉚)								
원인자부담금(㉛)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㉜)								

- 지출액⑥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⑥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⑥의 국고가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④' 국고= 지출액⑥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⑥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③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③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⑥의 국고가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④' 국고= 지출액⑥ 국고
 - 4,1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3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정산액③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③ 추정사업비④가 지출액⑥, 정산액③ 보다 클 경우

구분 (단위: 원)	추정사업비		지출액			미지출액	국고반납액
	당초④	재산정④'	계⑥=㉓+㉔	정산액③	정산제외액④	㉕=㉓-㉖	㉗=㉔+㉕
총계(㉓=㉒+㉔+㉕+㉖+㉗)	5,000,000,000	5,000,000,000	4,900,000,000	4,800,000,000	100,000,000	-	
국고	소계(㉒)	1,5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30,000,000	330,000,000	360,000,000
	보조율(%)	30%	30%	30%	30%		
지방비	소계(㉔)	3,500,000,000	2,800,000,000	2,730,000,000	7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㉕)							
원인자부담금(㉖)			1,000,000,000	1,000,000,000			
기타(㉗)							

□ 지출액⑥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⑥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⑥의 국고가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④' 국고= 지출액⑥ 국고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 정산액③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③ 국고를 산출

- 3,800,000,000원 * 30% = 1,140,000,000원

□ 정산제외액④ : 추정사업비④'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제외액④ 국고를 산출

- 100,000,000원 * 30% = 30,000,000원

나. 보조금 확정

1) 확정내역

(단위 : 원, %)

투자액		보조금 교부율 (B)	국고보조금 교부액 (C)	국고보조금 소요액 (A×B)	국고보조금 확정액 (D)	집행잔액 (C-D)
집행실적 보고액	심사액 (A)					
				0		

2) 환수액 산정

○ 환수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총 발생이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원

○ 발생이자 계산 : 다음의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발생이자를 반납한다.

① 보조금 교부로부터 집행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일까지의 발생이자

② 미집행액의 거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

③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의 발생이자

(간접보조사업자(위탁기관)의 발생이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국고 보조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교부받은 부처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사례 참고

〈붙임〉 00000 00시설 설치사업

세부심사내역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합 계						
2017-08-06	공사비	건설공사 1차공사 1회 기성대가	0000	000,000,000	000,000,000	
2017-12-20		전기공사 1회 기성대가	〃			
2017-12-21		건설공사 1차공사 2회 기성대가	〃			
2018-02-22		건설공사 1차공사 준공대가				
2018-06-24		건설공사 2차 준공대가				
2018-06-24		전기공사 준공대가				
2018-01-25		한전수탁공사비	0000			
2018-06-24		정보통신공사 준공대가				
2017-11-09		폐기물처리용역 1회 기성대가	0000			
2018-05-09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대가	〃			
공사비 소 계						
2017-04-28	관급자재비	관급자재(이형철근) 조달대금	0000			
2017-05-06		관급자재(H형강) 조달대금	〃			
2017-05-06		관급자재(철강빔) 조달대금	〃			
2017-06-01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08-0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09-02		관급자재(공기압축기 등) 조달대금				
2017-10-13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0-28		관급자재(스팀보일러) 조달대금				
2017-11-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7-11-25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02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연수화장치)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16		관급자재(공기압축기) 조달대금				
2017-12-24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8-01-19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17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8-04-07		관급자재(냉난방기) 조달대금				

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2018-05-09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연수화장치) 조달대금				
2018-05-1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1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6-0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3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관급자재비 소 계						
2017-02-27	설 계 비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12-17		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02-27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설계비 소 계						
2018-10-22	감 리 비	위탁수수료(1~3차분)	0000			
2017-05-04		위탁수수료(4차분)	0000			
2017-07-29		위탁수수료(최종분)	0000			
소 계						
2017-10-16	조 사 용 역 비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선급금지급	0000			
2017-12-26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0000			
2018-02-24		한전 사용전검사비	0000			
조사용역비 소 계						
2018-02-27	시 설 부 대 비	감독관 출장여비	0000			
2019-02-02		공사 신문공고료	0000			
2017-12-2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000			
2017-08-22		소각시설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수수료 지급	0000			
시설부대비 소 계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1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 가. ① 예산관리 -예산 교부, 집행, 정산 - 정산실적보고서 선택
 나. ② [신규] 버튼 클릭하여 보고서 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예산관리' (Budget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예산관리',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and '도움말'. The left sidebar has a menu with '예산관리' selected, and sub-items like '예산교부', '예산집행', and '정산실적보고서'.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정산 실적보고서' (Settlement Performance Report) section. It includes a header with filters for '연도' (Year), '예산종류' (Budget Type),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and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Below the filters is a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Category), '연도' (Year),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and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The table has a '신규' (New)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2'. The table itself is empty, showing only the header row and a few data rows.

다. ③ 보고서 작성 방안

1. 사업명 찾기

1-① ‘돋보기’ 버튼을 누른 후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해당 사업 찾기

2. 교부내역 작성

3. 지출내역 작성

정산 실적보고서

교부신청

▶ 보고서 서식 ▶ 보고서 출력 ▶ 초기화 ▶ 신규 ▶ 삭제 ▶ 저장 ▶ 접수 ▶ 제출 ▶ 취소 ▶ 닫기

1. 사업명 찾기

사업 기본정보

* 작성연도: 2021 진행상태: ☐ 신청구분: 시군구 * 사업종류: 선택

* 사업명: 선택 * 시군구: 서구 * 해당청(부): 선택

* 세부사업: 선택 * 세부사업: 선택 * 사업구분: 선택

* 위치: -- * 준공일시: -- * 면적(m²): --

* 국고보조율(%):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0 국고: 0 지방비: 사·도비: 0 사·군비: 0 원안자부담금: 0 민간자본: 0 기타비: 0

비고:

연도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원) * 열 추가 * 열 삭제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비	원안자부담금	기타비	증빙자료
		소계(b)	보조율(%)	소계(c)	사·도비				
합계	0	0	30	0	0	0	0	0	

2. 교부내역 작성

3. 지출내역 작성

사업비 지출세부내역

구분	합계	소계	공사비	총공사비	주안편의시설	폐기물처리비	관급자재
정산지출액							
정산요율금액							
요율초과금액							

정산 실적보고서

교부신청

▶ 보고서 서식 ▶ 보고서 출력 ▶ 초기화 ▶ 신규 ▶ 삭제 ▶ 저장 ▶ 접수 ▶ 제출 ▶ 취소 ▶ 닫기

1-①

사업 기본정보

* 작성연도: 2021 진행상태: ☐ * 사업명: 인현할매시 * 시군구: 서구 * 사업종류: 선택

* 세부사업: 선택 * 세부사업: 선택 * 해당청(부): 선택

* 위치: -- * 준공일시: -- * 면적(m²): --

* 국고보조율(%):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0 국고: 0 지방비: 사·도비: 0 사·군비: 0 원안자부담금: 0 민간자본: 0 기타비: 0

비고:

연도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원) * 열 추가 * 열 삭제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비	원안자부담금	기타비	증빙자료
		소계(b)	보조율(%)	소계(c)	사·도비				
합계	0	0	30	0	0	0	0	0	

사업명 찾기

사업 현황

* 연도: 2021 * 시군구: 인현할매시 * 시군구: 서구 * 사업종류: 선택

* 세부사업: 선택 * 사업명: -- * 사업종류: 선택

사업현황 목록 (총 3건)

번호	연도	시군구	신청연도	총공사비	사업명	사업종류
1	인현	서구	2021	정밀시정(신구)	인현	정밀시정
2	인현	서구	2021	정밀시정(신구)	인현	정밀시정
3	인현	서구	2021	정밀시정(신구)	인현	정밀시정

- 라. ④ 총사업비 승인문서, 국고 교부 통지서, 지출 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1. [엑셀 업로드] 및 [행추가] 버튼 선택하여 세부 집행내역 입력
 2. 증빙자료 부분의 '돋보기' 클릭하여 첨부파일 입력

세부 집행내역

구분	집행일자	집행내역	비고	지출 결의서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
공사비	2021-12-13			Q	Q	Q

1. 세부 집행내역 입력

2. 첨부파일

총사업비: 0 집행금액 소계: 정산제외액: 0

국고보조금(%): NaN 해상반납액: NaN

기타 증빙자료 첨부

첨부파일 정보

첨부파일 정보

순번 파일명 파일크기

첨부파일

한국환경공단

파일업로드 파일다운 파일삭제

저장 닫기

※ 구체적인 예산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참조

☎ 예산관리시스템 문의처 : 032-590-4603, 4613(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4장

Q & A



제4장 Q&A

Q1

2개 이상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별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턴키 공사 등 일괄공사로 사업이 진행되어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 사업과 통합 공사이므로 해당 공사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공사 원가계산서 등과 같이 **설계내역서 상의 구분 내역을 근거로 계산된 공사비 비율 산출자료를 정산자료 제출 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출된 금액마다 집행금액과 각 사업별 금액을 모두 구분하여 목록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정산예시입니다.)

일자	적요	채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2004.09.23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사 (2차) 선급금	(주)○○	지급금액	912,620,000	766,899,148
			소각	766,899,148	
			재활용	145,720,852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 (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 = A / (A+B)$ 50억/60억=83.3%	$B' = B / (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50억+20억×83.3% =66.67억	$D_B = B + B' \times 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_A = E \times A'$ 2억 × 83.3% = 1.67억	$E_B = E \times B'$ 2억 × 16.7% = 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_A = F \times A'$ 4억 × 83.3% = 3.33억	$F_B = F \times B'$ 4억 × 16.7% = 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Q2

위탁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는 위·수탁 수수료가 표기된 **협약서**, **위탁기관에서 집행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3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거나 준공시기가 오래된 사업의 제출 서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하여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 됩니다.

Q4

총사업비 결정통보 후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 비목간 증감금액을 조정하여 당초 총사업비와 다르게 집행금액을 정산해도 되는지요?

A 「총사업비관리지침」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Q5

시운전비로 사용된 공공요금은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시운전 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기타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유틸리티 비용**은 증빙서류 (공공요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보고서 및 시운전결과보고서, 준공 내역서, 공공요금 납부 지출결의서 등)를 제출 시에는 공사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6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와 다르게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어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고,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진 경우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을 때 국고 반납액은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지방비 추가투입으로 변경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에 따른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집행 잔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Q7

정산보고서 작성 시 정산반납액에 적용하는 국고지원비율은?

A 정산반납액은 총예산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정산 대상이 아닌 보상비 등을 제외한 국고지원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표> 정산보고서 중 국고지원비율 작성방법 (예시)

구 분		총예산	정산지출액	정산반납액
총계(a=b+c)		4,800,000,000	4,658,000,000	
국 고	소계(b)	1,440,000,000	1,397,400,000	42,600,000
	보조율(%)	30%	30%	
지 방 비	소계(c)	3,360,000,000	3,260,600,000	
	시·도비	1,800,000,000		
	시·군비	1,560,000,000		

Q8

준공금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A 준공검수조서, 최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공금에 대한 인정이 불가합니다. 최초 선급금으로부터 기성금까지의 증빙서류(기성검사조서, 계약서 등)이 완비된 경우에는 기성금까지의 지급액이 인정됩니다.

Q9 공사비 중 조사용역비와 시설부대경비의 설계용역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사용역비에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가 포함되고 설계용역비에는 입지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설계관련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Q10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 또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 2중으로 투입된 설계비는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변경된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되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Q11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감액정산을 반영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공사로부터 반환된 지체상금이 정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감액정산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집행내역 중 위탁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분류됩니까?

A 위·수탁수수료의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 시 집행내역을 감리비(위탁수수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각각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13

기존 소각로 철거 및 폐자재 및 잡철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 정산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폐자재 및 잡철 **감정평가용역**에 따른 내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Q14

준공일의 기준은?

A 최종계약서(또는 준공검사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혹은 주무관청이 실제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Q15

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시 연도별 재원별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작성하나요?

A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닌 **연도별 교부된 국고 및 최종 편성된 지방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국고교부통지서, 세입세출예산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16

총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대비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비율이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방법은?

A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고보조율은 집행 연도 **국고보조금결정통지서**에 따른 보조율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총예산 (A)	예 산 집 행 실 적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a=b+c)		231,000,000	221,936,480	120,000,000	75,200,000	26,736,480
국고	소계(b)	69,300,000	66,580,944	36,000,000	22,560,000	8,020,944
	보조율(%)	30%	30%	30.00%	30%	30%
지방비	소계(c)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도비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군비	-	-	-	-	-

Q17

설치검사수수료와 사용 전 검사수수료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수수료는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전 검사수수료 또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결의서 및 수납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토지 매입과 보상에 관련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 영농, 분묘 등의 보상금 및 관련 수수료, 농지·산림자원조성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은 정산 제외 대상입니다. 보상비 지급 용도의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또한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 시공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은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19

자재대금 정산 시 계약서 및 검수조서 자료를 분실하여 조달청에서 발생한 납입고지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가 지출결의서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계약서와 물품검수조서를 대체하여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20

시설 부대비용 중 방한화, 안전화 등 피복비, 사업관련 심의비용, 회의비는 정산 인정이 가능하니까?

A 감독 등 피복비와 심의 수당 및 회의 비용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사무용품 구입, 기공식 및 준공식 관련 비용, 법률 자문비용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Q21 장비구입비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 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공정의 일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장비구입비	공정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쓰레기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암롤BOX 청소차, 법면이나 주변정리를 위한 굴삭기 또는 불도저 등

Q22 모든 부담금 지출내역은 정산인정이 가능합니까?

A 모든 부담금이 정산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등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토지매입관련 비용으로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전기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Q23 공사비 중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정산인정 가능한가요?

A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측량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4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정산 인정됩니까?

A 총사업비 결정통보 이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되어 변경한 사항만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결정통보서 및 설계변경사유를 포함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 조정결과 통보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완료한 사항은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Q25

재원협의 시 지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되는지?

(상·하수도 관로 인입, 진입도로 건설, 소각로의 압축포장설비, TMS 전광판 설치 등)

- A 재원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산이 실시되므로, **재원협의 조건 및 조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지출하기로 협의된 사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불가합니다.

Q26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재산정후 지원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10백만원)이 발생한 경우(예시)

사업비로 총당된 부담금을 우선순위로 집행(480백만원-210백만원)한 후, 지방비 보조율(70%) 금액 집행에 따른 국고지원금액 정산

구 분			총예산 (A)		예 산 집 행 실 적	국고 반납액
			당초사업비	재산정사업비	정산지출액	
총 사 업 비	총계(a=b+c)		480,000,000	270,000,000	268,000,000	
	국 고	소계(b)	144,000,000	81,000,000	80,400,000	63,600,000
		보조율(%)	30%	30%	30%	
	지방비(c)		336,000,000	189,000,000	187,6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10,000,000	210,000,000	210,000,000	

※ 증빙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대장, 특별회계 관리대장

Q27

정산사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12년까지 232억원을 납부받고, 총사업비(719억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13년 정산 시 부담금(232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하여 감사 지적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부담금	민간투자비	감사시 지적
정 산	<u>71,948,000</u> (①) (100%)	<u>26,533,000</u> (②) (36.88%)	-	45,415,000 (63.12%)	과다교부 8,568,880
감사시 재산정	71,948,000 (100%)	<u>17,964,120</u> (③) (①-④)×36.88%	<u>23,238,345</u> (④)	30,745,535	[산출식] ②-③

Q28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 받아 특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후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Q29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촉구 등 미조치 사례

A A시는 사업시행자인 ○○사가 주택조성사업(143만㎡)을 하면서 착공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착공전에 제출하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Q30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부과하여 재정손실을 가져온 사례

A A시는 **택지조성(114만㎡)**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면제**,

B시는 **개발사업(52만㎡)**을 ○○건설사와 공동시행자로 개발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C시 청소행정과는 **개발사업(42만㎡)**을 직접 시행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D시 청소과는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사업(40만㎡)**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기관협의 시 부담금 해당 없음**으로 회신, **미부과**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75호) 별표 2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로 분류

Q3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A A시는 관내 5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에서 정한 소각시설 부지면적 산정 기준인 **1톤당 200㎡**를 따르지 않고 **150㎡~300㎡**까지 다르게 적용하여 불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Q32

민자사업에서 전체 집행금액이 국고 지원금액을 초과합니다. 집행증빙내역은 국고 지원금액 부분만 제출해도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까?

A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방비)에 민간자본**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총사업비의 지출증빙**으로 정산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고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민자 지출부분 지방비 지출부분까지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SPC로 집행한 지출내역’이 아니라 ‘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3

민자사업의 경우, 최초사용료 산정 등을 위하여 지자체 사업비 정산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이것과 국고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정지원금의 집행보고 및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 **사업비 정산**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 정산에서는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4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영업준비금 등도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증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증비 등)은 **국고 인정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전액 민자 집행**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민자에서 모두 집행하였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35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및 공사 진행 중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 과정 및 최종 승인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총사업비 결정(조정) 통보 문서가 필요합니까?

A 정산을 위하여 **실시협약(최초 및 변경, 최종), 최초 총사업비 결정 통보, 총사업비 조정 통보**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②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36

소액의 물품구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승낙사항(「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 바, 그 승낙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내용으로 작성하여 구비해 놓아야 하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37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함에 따라 검수(검사)조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의 경우, 검사담당자가 소액 또는 세부적인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집행내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근거가 되는 자료(내부결재문서 등)**를 제출하셔야 정산인정이 가능합니다.

Q38 사업 목적에 맞는 여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여비의 정산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명 및 출장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보고서, 결의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시설부대비 (여비)	사업 진행을 위한 여비 자료수집, 시설견학, 물품검수, 업무협의 현장감독	해외출장, 정산제외대상(용지보상비 등) 관련 여비, 본 사업과 관계없는 출장여비

Q39 시설부대경비의 효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정산 불인정이 될 수 있나요?

- A 시설부대경비의 효율산정항목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효율은 **해당연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기준효율**을 따르며 사업에 집행된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효율과 공사비의 곱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산 불인정**됩니다.

< 직 선 보 간 법 >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효율, y^1 : 작은금액효율, y^2 : 큰금액효율

- ※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신규사업 해당년도('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효율을 따름)]

Q40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요율 초과

A

지자체	사업기간	공사비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A시	12.03.15~ 18.11.15.	3,628,940,350원	192,907,000원	60,608,540원	34,103,740원

※ 시설부대비 : 정산제외항목금액 21,043,000원 포함

→ 2012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요율 적용

<시설부대경비 요율> (단위:%)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0 억 원 까 지	1.79	3.16	1.66	0.63
20 억 원 까 지	1.45	2.91	1.53	0.36
30 억 원 까 지	1.40	2.80	1.48	0.36
50 억 원 까 지	1.37	2.75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34	2.67	1.41	0.25

- 설계비 : 실시설계의 경우 실시설계비 요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요율과 실시설계비 요율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 $x : 3,628,940,350\text{원}$, $x^1 : 50\text{억}$, $x^2 : 30\text{억}$

$y^1 : 1.40 + 2.80 = 4.2\%$, $y^2 : 1.37 + 2.75 = 4.12\%$ ∴ $y : 4.174\%$

∴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금액 : $3,628,940,350 \times 0.04174$

= 151,471,970원까지 **정산인정**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정산제외 비용 : $192,907,000\text{원} - 151,471,970\text{원}$

= 41,435,030원 **정산불인정**

- 감리비 : “공사감리”란 비상주감리

→ $x : 3,628,940,350\text{원}$, $x^1 : 50\text{억}$, $x^2 : 30\text{억}$

$y^1 : 1.48\%$, $y^2 : 1.45\%$ ∴ $y : 1.470\%$

∴ A시 공사감리비 비용 : $3,628,940,350 \times 0.01470$

= 53,345,423원까지 **정산인정**

A시 공사감리비 정산제외 비용 : $60,608,540\text{원} - 53,345,423$

= 7,263,117원 **정산불인정**

Q40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요율 초과 (계속)

A ○ 시설부대비 :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공사 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x : 3,628,940,350원, x^1 : 50억, x^2 : 30억
 y^1 : 0.36%, y^2 : 0.27% ∴ y : 0.331%

∴ A시 시설부대비 비용 : 3,628,940,350 × 0.00331
 = 12,011,792원까지 **정산인정**

A시 시설부대비 정산제외비용 : 34,103,740원 - 21,043,000원 - 12,011,792원
 = 1,048,948원 **정산불인정**

※ 정산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산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을 먼저 제외하고 요율에 의해 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Q41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최초 중앙관서의 장과 총사업비를 55억원으로 확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면서 사업물량과 설계확정으로 **총사업비가 53억원으로 변경** 되었음에도,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42 낙찰차액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발주금액을 156억원에 대한 계약금액 125억원의 차액인 **낙찰차액 31억원이 발생** 하였는데도 **총사업비 조정(감액)** 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낙찰차액	감사시 지적
정 산	156억원 (①) (100%)	78억원 (②) (50%)	-	과다교부 15.5억원 [산출식] ②-③
감사시 재산정	156억원 (100%)	62.5억원 (③) (①-④)×50%	31억원 (④)	

Q43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공사비 **낙찰차액이 10억**이 발생되자,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6억원을 공사의 보상비나 관급자재비 등으로 집행하여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44 중앙관서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 부적정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주민의견 수렴여부 등 당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연도 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K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연·중단이나 사업포기** 등으로 보조금 726억원이 **장기간 사장**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여부,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Q45 중앙관서 국고보조금액 확정 정산지연 사례 (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A시가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로부터 4년 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97개 보조사업(총사업비 830,063백만원, 보조금 552,532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여 동안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 보고서를 받으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46 지자체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보조사업(총사업비 300,469백만원, 보조금 235,100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적보고서(정산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Q4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A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을 반납되지 않고 있는**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46개 보조사업(총사업비 716,742백만원, 보조금 493,749백만원)에 대하여 총 112억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장기간 반납되지 않고** 있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Q48 위탁 대행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조치 부적정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기관인 B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587,563,357원을 반납받고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는 등 69개 지방자치 단체의 9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 137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감사지적

구 분	교부액	집행일	이자액	감사시 지적
A부처		'18.1.10		미반납 이자 46,986,293원
B지자체	25억	'18.2.15	4,931,500원 (1.10~2.14)	
C위탁기관	25억	'18.7.10	19,863,013원 (2.15~7.9)	
D시공사	25억	'18.12.20	22,191,780원 (7.10~12.19)	

Q49 다음연도 완공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를 언제 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안신청 시 사업기간을 '14년부터 ~'18년까지로 계획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할 경우, 신청가능한 시기는 '17년 2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중앙관서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Q50 편익시설 설치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래사용 목적으로 주민지원기금 46억원을 조성(예치) 하였다가 정산 시 국고보조금 (보조율 50%) 23억원을 반납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한다.

Q51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에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한 국고보조금이 15억을 넘을 경우 개소당 15억 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국고 반납액은 총 지출금액의 70%(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율)가 15억보다 적을 경우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지출금액의 70%가 이미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더라도 국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5장

서 식



제5장 서 식

【서식1】 국고보조금 실적(정산) 보고서

국 고 보 조 사 업 실 적 (정 산) 보 고 서

1.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m ³)	총사업비			
				국 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 확정된 총사업비 중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민간자본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2012									
2013									
2014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합계	총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조사· 용역비					

4. 세부지출내역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단위 : 원)

구 분	집 행 일	집 행 내 역	집 행 금 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소 계			
설 계 비					
		소 계			
감 리 비					
		소 계			
시설부대비					
		소 계			
집 행 내 역 총 계					

5.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6.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붙임 자료

붙임 1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분류 및 비율

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붙임 4 : 시설부대경비 요율

붙임 5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붙임 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붙임 1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서식 #1), 제출서류 목록표
- ② 지출결의서(지출일 표기, 지출담당자 서명·날인) 또는 재정집행시스템 전산자료 (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원본대조필 표기)
- ③ 계약서

공통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	-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부대비를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 2개 이상의 용역을 통합하여 진행	- 정산대상과 비대상 용역으로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모두 정산 대상 또는 정산제외 일 경우 근거자료는 미제출
사업계획	
○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신청	- 사업계획서 ; 사업규모, 소재지, 시설연계·광역 처리 여부 ; 사업비요구액(세부내역), 국고보조율(%)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보서 ; 사업개요 및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국고보조금 신청·반영	
○ 국고 신청	- 국고보조금신청서(필요시)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확인(사업계획서 참조)
○ 국고 교부 반영 및 확정	- 국고 교부통지서(발신처: 환경부 혹은 해당 시·도) ; 확정·교부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확정액, 교부액 비교)
총사업비 변경·조정 (변경·조정 승인 내역이 있을 경우)	
○ 총사업비 변경·조정 신청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신청서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조정신청내역 확인 ; 변경(승인)·조정사유 확인 -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 물가변동 추정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총사업비 변경·조정 확정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확정통지서 ; 확정·반영된 총사업비·국고, 조정사유 등

사업위탁대행, 설계, 감리	
○ 사업위탁대행	- 위탁협약서 ; 지자체-대행사업자(공단 등 공공기관) 간 위탁체결 내용 ; 위탁기간, 대행사업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등 -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 ; 대행사업비 산정내역 포함된 위탁 관련 공문 등 (대행사업비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 증빙 관련 서류 등) - 사업비지급(계좌) ;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 ; 위탁대행사업, 공사, 설계, 감리 등 계약액 지급내역
○ 설계	- 설계계약서 ; 설계대상 소재지, 규모 등 ; 최종계약금액, 결의서 지급금액과 일치 여부 -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감리	- 감리계약서 ; 지자체-감리업체 간 계약내용(감리기간, 금액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준공검수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시설공사	
○ 공사계약	- 공사계약서 ; 준공일, 준공기간 기본내용, 계약금액 등 확인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시공사의 착공계, 준공계, 준공보고서 등 참고활용, 정산금액에 결의서 및 계약서를 대체 불가

○ 시설준공(사업완료)	-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 준공기간, 준공규모, 계약변경 세부내역 등 확인 (당초 사업계획내용과 비교, 변경내역 사유 등) - 준공검수조서/준공감독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준공사진 ; 준공 전·후 사진비교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관급자재	- 계약서 ; 지출결의서 금액과 동일한 조달청 납입고지서 및 계약서 - 물품검수조서 ; 담당자(감리자, 담당공무원) 반드시 날인 ; 자재수량, 규격, 단가 표시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기타(부대비 등)	
○ 시설설치검사(매립, 소각 등)	- 설치검사서(검사결과서) ; 중간검사, 최종검사 실시여부 ; 세부항목 검사결과 적합(합격)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등) - 설치검사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처리시설별 수수료 및 세부내역
○ 용역운영	- 용역계약서 ; 용역내용, 용역기간, 완료일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준공(용역)보고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수조서, 준공감독조서, 지출결의서 등 반드시 제출
○ 담당공무원 등 출장여비	- 지출결의서/여비지급명세서 등 ;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확인(출장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여비지급명세서 등) 별도로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사업비 정산 및 잔액	
○ 사업비정산	- 사업비 정산서 ;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제출, 당초 예상액과 비교 확인 ; 징수결의서, 관련공문, 통장거래내역 증빙자료 활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 적용
○ 사업비잔액(이자 등)	- 집행실적보고서 - 사업비계좌내역 ;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입출 내역 확인(이자, 법인세), 예금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 2-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분류

세부사업	내역사업	관리주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특회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매립시설 소각시설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유역(지방) 환경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부 (생활하수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농특회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유역(지방) 환경청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환특회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일반 공공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기후기금)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기후기금)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환경부 (생활하수과)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붙임 2-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정사업]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1) 소각시설	○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2)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광역시	40	60	
3) 일반 공공선별시설	○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70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0)	(50)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6) 공공 열분해시설		50	50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1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11)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12) 매립가스자원화시설				
1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70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 까지

-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붙임 2-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민자사업]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text{국고보조금} = (\text{총사업비} - \text{민자 제안액}) \times \text{국고지원비율}(\%)$$

※ 다만,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민자	
1) 소각시설	○ 특별시	50	50		공동시설만 지원
2)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광역시	60	40		
3) 일반 공공선별시설	○ 일반사군 (광역시설)	50 (70)	50 (30)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 도서지역	70	30		매립시설은 30%지원
6) 공공 열분해시설				제안액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70	30		
10)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11)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12) 매립가스자원화시설					
1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90	10		15억원/개소까지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별도 지침에 따름(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2022.12. 물가반영)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소각 시설	신규	30톤/일 이하	6.73억원/톤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 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 할증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 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 - 2개월(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6.66억원/톤				
		50톤/일 초과~100톤/일 이하	5.82억원/톤				
		100톤/일 초과~200톤/일 이하	5.48억원/톤				
		200톤/일 초과	4.98억원/톤				
	대보수	30톤/일 이하	4.79억원/톤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4.95억원/톤				
		50톤/일 초과~100톤/일 이하	4.25억원/톤				
		100톤/일 초과~200톤/일 이하	3.89억원/톤				
		200톤/일 초과	3.63억원/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음식물	150톤/일 이하	4.59억원/톤			-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미처리시 실시설계후 재원협의 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4.24억원/톤				
		400톤/일 초과	3.90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2.89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56억원/톤				
		400톤/일 초과	2.39억원/톤				
	통 합	음식물	150톤/일 이하	4.03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72억원/톤			
		음폐수	400톤/일 초과	3.41억원/톤			
			150톤/일 이하	2.63억원/톤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해양폐기물선별시설 (억원/톤)		시 설 규 모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미만	-	6.46	4.61		
		10톤/일 이상~20톤/일 미만	5.01	4.53	-		
		20톤/일 이상~30톤/일 미만	3.89	3.57	-		
		30톤/일 이상~40톤/일 미만	3.73	2.91	-		
		40톤/일 이상~50톤/일 미만	3.57	2.58	-		
		50톤/일 이상~60톤/일 미만	3.48	2.27	-		
		60톤/일 이상~70톤/일 미만	3.40	2.11	-		
		70톤/일 이상~80톤/일 미만	3.34	1.94	-		
		80톤/일 이상~90톤/일 미만	3.31	1.85	-		
90톤/일 이상	3.27	1.77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2.75억원/톤			- 보관 및 기계적 또는 수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공공열분해시설			4.16억원/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1.36억원/톤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고
매립 시설	신규	100천m ³ 이하		153.19천원/m ³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m ³)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100천m ³ 초과~150천m ³ 이하		137.89천원/m ³	
		150천m ³ 초과~200천m ³ 이하		110.30천원/m ³	
		200천m ³ 초과~250천m ³ 이하		94.98천원/m ³	
		250천m ³ 초과~300천m ³ 이하		85.80천원/m ³	
		300천m ³ 초과~350천m ³ 이하		79.66천원/m ³	
		350천m ³ 초과~400천m ³ 이하		73.52천원/m ³	
		400천m ³ 초과~500천m ³ 이하		68.92천원/m ³	
		500천m ³ 초과~600천m ³ 이하		64.34천원/m ³	
		600천m ³ 초과~800천m ³ 이하		61.28천원/m ³	
		800천m ³ 초과~1,000천m ³ 이하		53.62천원/m ³	
		1,000천m ³ 초과~2,000천m ³ 이하		45.96천원/m ³	
		2,000천m ³ 초과		38.30천원/m ³	
	증설	수평 증설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수평, 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
		수직 증설(개단식 확장)		21.01천원/m ³	
	매립지 정비	안정화	차수공 적용	699.41천원/m ³	차수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차수공 적용'선정
			차수공 제외	267.21천원/m ³	
		굴착, 선별 후 이적	10천m ³ 미만	88.11천원/m ³	
			10천m ³ ~100천m ³ 미만	73.22천원/m ³	
			100천m ³ ~400천m ³ 미만	66.43천원/m ³	
			400천m ³ 이상	62.36천원/m ³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400천m ³ 미만	65.91천원/m ³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400천m ³ 이상	61.88천원/m ³	
		조성	모든 시설	40.36천원/m ³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발전시설 (가스터빈)	0.3MWh 이하		50.33억원/MWh	
		0.3MWh 초과~0.7MWh 이하		43.54억원/MWh	
		0.7MWh 초과~1.0MWh 이하		38.08억원/MWh	
		1.0MWh 초과		34.0억원/MWh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소각시설 (회분식)	3.0톤/일 이하		11.52억원/톤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9.53억원/톤	
	차단형 매립시설	0.2천m ³ 이하		2,186.33천원/m ³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 ² 추가적용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2천m ³ 초과~0.6천m ³ 이하		1,188.92천원/m ³	
		0.6천m ³ 초과~2.0천m ³ 이하		519.39천원/m ³	
		2.0천m ³ 초과~5.0천m ³ 이하		456.58천원/m ³	
	관리형 매립시설	2천m ³ 이하		698.64천원/m ³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2천m ³ 초과~10천m ³ 이하		580.67천원/m ³	

주1)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

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 적용

주2)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단가의 1.4배 이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하여 협의하여야 함

주3) 설계시 검토된 해당공종 및 공정 공사비 내에서 공법선정 필요

주4)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적환시설의 경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가능

주5) 각 처리시설(소각시설 외) 대부분 표준단가는 시설규모별 신설표준단가의 70%적용

붙임 4 시설부대경비 효율(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직 선 보 간 법 〉

※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으로 효율을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미만은 절삭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¹ : 큰금액, x²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효율, y¹ : 작은금액효율, y² : 큰금액효율

○ 건설부문 효율

(단위 :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¹⁾	시설부대비 ²⁾
5 천만원 까 지	3.35	6.42	3.02	1.08
1 억 원 까 지	3.19	6.09	2.85	0.90
2 억 원 까 지	2.69	5.11	2.26	0.72
3 억 원 까 지	2.53	4.78	2.06	0.72
5 억 원 까 지	2.36	4.46	1.89	0.72
10 억 원 까 지	2.17	4.07	1.66	0.63
20 억 원 까 지	1.97	3.71	1.53	0.36
30 억 원 까 지	1.88	3.54	1.48	0.36
50 억 원 까 지	1.80	3.41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71	3.24	1.41	0.25
200 억 원 까 지	1.61	3.06	1.37	0.23
300 억 원 까 지	1.57	3.01	1.35	0.23
500 억 원 까 지	1.50	2.90	1.33	0.23
1,000 억 원 까 지	1.45	2.79	1.30	0.23
2,000 억 원 까 지	1.39	2.70	1.28	0.21
3,000 억 원 까 지	1.37	2.64	1.25	0.19
5,000 억 원 까 지	1.32	2.58	1.23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위 기준효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효율을 따른다.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효율의 50%를 가산한다.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91	7.46
2	억	원	까	지	2.76	7.06
3	억	원	까	지	2.60	6.66
5	억	원	까	지	2.47	6.32
10	억	원	까	지	2.30	5.89
20	억	원	까	지	2.18	5.58
30	억	원	까	지	2.05	5.26
50	억	원	까	지	1.95	4.99
100	억	원	까	지	1.81	4.65
200	억	원	까	지	1.72	4.41
300	억	원	까	지	1.62	4.16
500	억	원	까	지	1.54	3.94
1,000	억	원	까	지	1.43	3.67
2,000	억	원	까	지	1.36	3.48
3,000	억	원	까	지	1.28	3.28
5,000	억	원	까	지	1.21	3.11

※ “산업플랜트”란 하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은 건설부문요율 적용)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

공 사 비	개 산 요 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억 원 까 지	9.66	10.73	11.80
200 억 원 까 지	7.34	8.14	8.97
300 억 원 까 지	6.24	6.92	7.62
400 억 원 까 지	5.48	6.09	6.70
500 억 원 까 지	4.96	5.52	6.07
700 억 원 까 지	4.38	4.87	5.35
1,000 억 원 까 지	3.93	4.36	4.79
1,500 억 원 까 지	3.44	3.82	4.21
2,000 억 원 까 지	3.11	3.45	3.79
3,000 억 원 까 지	2.73	3.03	3.32
5,000 억 원 까 지	2.32	2.57	2.82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22. 5. 1 이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22. 5. 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 시설별 시설부대경비 적용방법

구 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 종류	감리 구분			
매립시설	비상주 감리	건설부문	건설부문	건설부문
	전면 책임감리		단순한 공종	
매립 외 처리시설	비상주 감리	산업플랜트부문	건설부문	건설부문
	전면 책임감리		복잡한 공종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22.2.2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3호, 2022.2.23.,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24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824
	200kg/h 이상	1,038
준연속식	200kg/h 미만	1,274
	200kg/h ~ 2ton/h	1,779
	2ton/h 이상	3,443
연속식	200kg/h 미만	2,471
	200kg/h ~ 2ton/h	3,164
	2ton/h 이상	9,166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599
	200kg/h 이상	740
준연속식	200kg/h 미만	775
	200kg/h ~ 2ton/h	1,170
	2ton/h 이상	2,066
연속식	200kg/h 미만	1,301
	200kg/h ~ 2ton/h	1,862
	2ton/h 이상	5,521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 원)
5,000㎡미만	유	5,281
	무	4,019
5,000㎡이상 ~ 10,000㎡미만	유	11,859
	무	7,44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3,554
	무	8,5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5,248
	무	9,568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7,580
	무	11,375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20,415
	무	13,2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23,250
	무	15,036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6,576
	무	17,299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30,081
	무	19,425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34,490
	무	22,455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40,199
	무	26,097
5,000,000㎡이상	유	47,661
	무	30,801

4. 매립시설 정기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 원)
5,000㎡미만	유	5,851
	무	4,557
5,000㎡이상 ~ 10,000㎡미만	유	14,338
	무	8,749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6,214
	무	9,574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7,799
	무	11,349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20,589
	무	13,102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23,588
	무	15,169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27,613
	무	17,238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31,495
	무	19,986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35,016
	무	23,572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41,254
	무	26,775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48,174
	무	31,802
5,000,000㎡이상	유	57,376
	무	37,023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이상 ~ 10,000㎡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3,147
	무	9,433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8,394
	무	13,147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0,986
	무	15,20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23,640
	무	16,800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26,233
	무	18,928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28,887
	무	20,986
5,000,000㎡이상	유	31,480
	무	22,580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이상 ~ 10,000㎡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2,551
	무	7,305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14,145
	무	8,43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16,274
	무	9,433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17,798
	무	10,493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19,392
	무	11,553
5,000,000㎡이상	유	21,521
	무	12,551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 원)
500kg/h 미만	692
500kg/h 이상	871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단위:천 원)
500kg/h 미만	548
500kg/h 이상	692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621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955
	50톤/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302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815
	50톤/일 이상	2,712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846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2,21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520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62
	50톤/일 이상	1,318

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513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76
	50톤/일 이상	1,299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087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517
	50톤/일 이상	2,241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678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879
	50톤/일 이상	1,90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434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635
	50톤/일 이상	1,036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이상	2,797
준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4,214
	2ton/h 이상	6,386
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6,998
	2ton/h 이상	11,885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2,233
	200kg/h 이상	2,496
준연속식	200kg/h 미만	2,376
	200kg/h ~ 2ton/h	3,417
	2ton/h 이상	4,831
연속식	200kg/h 미만	3,057
	200kg/h ~ 2ton/h	5,136
	2ton/h 이상	7,711

비고

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 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 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진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 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15. 규제의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구분	관 련 규 정
공통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8.9.)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지침(환경부, 2016.6.)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환경부, 2016.6.)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5.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 고시)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12.10.)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용량 변경 지침(환경부, 2008.12.)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하수슬러지 혼합소각 지침(환경부, 2007.4.)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021.4.)
매립시설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 •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 고시) •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8.) •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환경부 고시)

구분	관 련 규 정
음식물류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02.3.)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 2015.12.)
친환경 에너지타운	•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환경부)
기타	•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환경부, 2009.12.)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 고시)

※ 그 외 관련 규정도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시설에 따라 적용

